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14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시된 비치장소가 너무 적어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함에 장애가 되는 바,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으로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지를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제4호부터 안 제3조제9호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도시안전과

라.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3조(비치장소)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신 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 설>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신 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 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 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생략)	10. (현행 제5호와 같음)